

수원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18가단5478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도기영, 안형윤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광
담당변호사 서민석, 정지현, 김도연
변 론 종 결 2021. 9. 7.
판 결 선 고 2021. 10. 26.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7. 8. 24. 체결된 15,000,000원 증여계약과 2017. 9. 25. 체결된 125,0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2017. 8. 24. 체결된 15,000,000원 증여계약과 2017. 9. 25. 체결된

135,0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각 보증약정 체결, 보증서 발급, 대출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및 공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0. 3. 31. 설립되었고, 피고의 배우자인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명칭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이었다가 2016. 9. 30.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되었다)와 소외 회사는 ① 2010. 6. 16. 신용보증원금을 1억 원, 신용보증기한을 2011. 6. 15.로 하는 보증약정(이하 ‘제1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② 2011. 8. 19. 신용보증원금을 9,000만 원, 신용보증기한을 2012. 8. 17.로 하는 보증약정(이하 ‘제2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B은 원고에게 위 각 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각 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본인’은 소외 회사를 의미한다).

제5조 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3.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4.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있는 때

7.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신고자 정보 제외)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9. 법인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개인기업의 공동경영자(실제경영자 포함)에 대하여 위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때

10. 전 각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3) 이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 수지상현지점장에게 ① 제1 보증약정에 따라 2010. 6. 16. 보증원금을 1억 원, 피보증인을 소외 회사, 보증기한을 2011. 6. 15., 보증방법을 근보증, 대출예정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기술신용보증서(이하 '제1 보증서'라 한다)를, ② 제2 보증약정에 따라 2011. 8. 19. 보증원금을 9,000만 원, 피보증인을 소외 회사, 보증기한을 2012. 8. 17., 보증방법을 개별보증, 대출예정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기술신용보증서(이하 '제2 보증서'라 한다)를 각 발급하였다.

4)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D은행으로부터 ① 2010. 6. 16. 1억 원을, ② 2011. 8. 22. 1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5) 이후 ① 제1 보증서에 따른 보증기한이 2018. 6. 8.까지 연장되었고, 보증금액이 8,50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② 제2 보증서에 따른 보증기한이 2018. 6. 8.까지 연장되었다.

나. 각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지급

- 1) B은 2013. 1. 24. E과 F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25.부터 2015. 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E에게 위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2) E과 F은 2017. 8. 19. I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제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 3) 피고는 2017. 8. 24. J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K호를 보증금 2억 3,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2억 1,000만 원은 2017. 9. 25.에 각 지불), 임대차기간 2017. 9. 25.부터 2019. 9. 2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4) E은 2017. 8. 24. 자신의 L은행 계좌에서 B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B 계좌’라 한다)로 1,5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B에게 제1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1,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B은 같은 날 B 계좌에서 피고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피고의 N은행 계좌’라 한다)로 1,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 5) 피고는 피고의 N은행 계좌에서 J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J의 O조합 계좌’라 한다)로 2017. 8. 21. 100만 원을, 2017. 8. 24. 1,900만 원을 각 이체함으로써 J에게 제2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6) E은 2017. 9. 25. 피고에게 1억 3,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함으로써 제1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잔액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① J에게 위 수표 중 6,0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주식회사 N(이하 ‘N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전세대출을 받으면서(이하 위 전세대출에 의한 대출금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N은행으로 하여금 J의 O조합 계좌로 위 전세대출금을 보내도록 함으로써 J에게 제2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잔금 2억 1,000만 원(= 6,000만 원 + 1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 7) 피고는 E으로부터 받은 수표 잔액 7,500만 원(= 1억 3,500만 원 - 6,000만 원) 중 6,500만 원을 2017. 9. 25. 피고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이하 ‘피고의 P은행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고,

2017. 9. 29. 피고의 P은행 계좌에서 B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8) 피고는 2017. 10. 10. 피고의 P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N은행 계좌로 5,570만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N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돈으로 N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40,195,410원과 중도상환해약금 313,412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금은 1억 1,000만 원(= 1억 5,000만 원 - 4,0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다. 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

1) D은행은 2018. 6. 25. 원고에게 피보증인을 소외 회사, 사고내용을 '2018. 4. 24.자 이자연체'로 하는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8. 8. 16. D은행에 ① 제1 보증서에 따라 원금 8,500만 원과 이자 1,740,548원, ② 제2 보증서에 따라 원금 9,000만 원과 이자 1,732,585원, 합계 178,473,1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 갑 제4, 5, 9,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B은 피고에게 2017. 8. 24. 1,500만 원을, 2017. 9. 25. 1억 3,500만 원을 각 증여하였고, 위 각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행해진 2017. 8. 24.과 2017. 9. 25. 이후인 2018. 8. 16.에 있는 대위변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제1, 2 각 보증약정 체결로 인해 위 2017. 8. 24.과 2017. 9. 25.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있었다.

한편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소외 회사는 기업은행에 대한 110,914,000원의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2017. 7. 29.부터, 124,200,000원의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2017. 8. 22.부터 각 연체한 사실, ② 소외 회사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124,200,000원의 지급보증채무를 2017. 8. 29.부터 연체하여 신용보증기금이 2017. 12. 28. 126,266,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③ 원고는 소외 회사를 2017. 9. 13. 사고유보기업으로, 2018. 1. 23. 사고기업으로 각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2017. 8. 24.과 2017. 9. 25.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8. 8. 16.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

(1) 피고와 B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 여부 및 증여금액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나) B이 2013. 1. 24. E과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후 E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B의 E과 F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은 B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피고와 B이 모두 경제활동에 종사하였고, 각자 벌어들인 수입을 모아 위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마련하였으므로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와 B의 공유재산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보증금 마련에 있어 피고의 협력이 있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는 것을 넘어서서 피고가 대가를 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B의 특유재산이므로, B이 ① 2017. 8. 24. E으로부터 보증금 중 1,500만 원을 반환받은 다음 같은 날 B 계좌에서 피고의 N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한 것과 ② 2017. 9. 25. E으로 하여금 보증금 중 잔액 1억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은 각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가 E으로부터 받은 수표 잔액 7,500만 원 중 6,500만 원을 2017. 9. 25. 피고의 P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2017. 9. 29. 피고의 P은행 계좌에서 B 계좌로 1,000만 원은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그 시간적 간격으로 볼 때 B이 2017. 9. 25. 피고에게 증여한 금액은 1억 2,500만 원(= 1억 3,500만 원 - 1,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B이 2017. 8. 24. Q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렸고, 피고가 2017. 9. 28. Q에게 위 차용원리금 220만 원을 B 대신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의 2019. 10. 17.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2의 기재)에 의하면 Q이 2017. 8. 24. 자신의 N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P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가 2017. 9. 28. 피고의 P은행 계좌에서 Q의 N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200만 원이 Q의 B에 대한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Q에게 220만 원을 지급한 것이 B의 차용금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B이 2017. 9. 25. 피고에게 증여한 금액에서 22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따라서 피고와 B이 ① 2017. 8. 24. 1,500만 원 증여계약(이하 '제1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② 2017. 9. 25. 1억 2,500만 원 증여계약(이하 '제2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할 당시 B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178,473,133원의 구상금채무이다.

(나)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제1, 2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이 소유한 부동산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B 계좌의 잔액이 ① 제1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151,691원, ② 제2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140,802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B의 적극재산은 ① 제1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150,151,691원(= 보증금 150,000,000원 + B 계좌 잔액 151,691원), ② 제2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135,140,802원(= 보증금 135,000,000원 + B 계좌 잔액 140,802원)이다.

(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1, 2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채무자의 사해의사

살피건대, ①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누구보다 소외 회사의 재무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였던 점, ② 피고는 B의 처인 점, ③ 제1 임대차계약에 따른 1억 5,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사실상 B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인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로 취소가 제한되는바,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대위변제액만 해도 178,473,133원으로 제1, 2 각 증여계약의

증여금액 합계 1억 4,000만 원(= 1,500만 원 + 1억 2,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전체가 취소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 2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선의

피고는 제1, 2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의 각 증여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1) 피고의 항변

피고와 B 사이의 이혼판결에서는 재산분할의 비율을 피고 60%, B 40%로 인정한바, 피고가 B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 중 60%에 해당하는 9,000만 원은 피고가 소유한 재산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9. 26.

수원가정법원에 B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2019드단512369)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8. 12. 피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을 피고의 적극재산 2억 3,000만

원(제2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에서 소극재산 1억 1,000만 원(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금 잔액)을 뺀

1억 2,000만 원으로 보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피고 60%, B 40%라고 보아 피고가 B에게

재산분할로 4,800만 원(= 1억 2,000만 원 $\times$ 0.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소는 2017. 9. 25. 제2 증여계약이 체결된 후 2년이 지나고, 2018. 10. 12.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1년가량 지나서야 제기된바, 제1, 2 각 증여계약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위 항변의 취지가 매우 불분명하나, 제1 임대차계약에 따른

B의 1억 5,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이 B의 특유재산이 아니라 피고와 B의 공유재산이라는

주장이라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B의 특유재산이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제1, 2 각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주장이라면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지창구